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5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한민수 · 이학영
문진석 · 이연희 · 박수현
전현희 · 정태호 · 한준호
백혜련 · 최혁진 · 조승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최근 「참전유공자법」의 개정('25.9.16.)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
이에 따라 「고엽제법」 적용 대상자 중 ‘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’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, ‘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’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
따라서,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

7조의10 등).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”을 “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(이하 “배우자”라 한다) 및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4.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엽제후유증”을 “그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10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

제7조의10제1항 중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”를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조의5 및 제7조의9”를 “이 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”을 “이 법에 따라 지원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1호 중 “고엽제후유증”을 “그 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”을 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 배우자 및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, 이 법 시행 이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생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이 법 시행 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대상자) 이 법은 <u>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</u> 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 · 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.	제3조(적용 대상자) ----- <u>고엽제후유증환자 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(이하 “배우자”라 한다) 및 -----</u> --.
제4조(적용 대상자의 결정 · 등록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제4조(적용 대상자의 결정 · 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
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제4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
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
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·등
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
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
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
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7조의10(생계지원금) ① 제7조

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
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
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
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
① -----
----- 그 배
우자 및 고엽제후유증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
된 경우

10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
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
우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10(생계지원금) ① -----

----- 고엽제후유의증환자
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
상의 배우자-----
-----.

② ~ ⑤ (생략)

제28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고업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(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)을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재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-----

-----이 법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이 법에 따라 지원-----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① -----

[illegible]

1. -----
----- 그
배우자 및 고엽제후유증 ----

2. ----- 고엽제후유
의증환자 또는 그 배우자 및

3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